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6. 15.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기호
----------	-----

제출연월일 : 2020. 6.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다양한 형태의 성인문해교육사업 확대 추진 및 명예학력인정제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논산시 문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참여자의 자긍심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교육기본법』 제3조~제4조, 제8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년 5월 6일 ~ 5월 26일 (21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를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규정함” 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을 “ “성인문해교육단체” 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으로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 한다.” 를 “마련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및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6.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사업개발 및 지원
7.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지원
8. 성인문해교육 관련 자체 학력인정과정 계획 수립 및 지원
9.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에 대한 포상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해학습자” 를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을 “회의”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를 “작품집 발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인문해교육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6.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 가. 사업추진비
  - 나. 참여자의 차량지원 및 식비, 입장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인문해교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중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를 “성인문해교육단체 및 성인문해교육강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성인문해교육강사”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명예학력인정서·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음식, 이미용, 목욕 등 할인 쿠폰 제공
2. 농·특산물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3.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100세행복과장	김 진 수
	행복배움팀장	엄 해 경
	담 당 자	정 선 옥 (746-5814)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 ----- -----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 -----.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 -----마련할 수 있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및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설>	6. <u>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사업개발 및 지원</u>
<신설>	7. <u>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지원</u>
<신설>	8. <u>성인문해교육 관련 자체 학력인정과정 계획 수립 및 지원</u>
<신설>	9. <u>성인문해교육 참여자에 대한 포상</u>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10.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u>	2. <u>성인문해교육 참여자</u> ----- -----
3. <u>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u>	3. ----- ----- <u>회의</u> --
4. <u>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u>작품집 발간</u>, 문화행사 등</u>	4. ----- ----- <u>작품집 발간</u> ----- --
<신설>	5. <u>성인문해교육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u>
<신설>	6. <u>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u> <u>가. 사업추진비</u> <u>나. 참여자의 차량지원 및 식비, 입장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u>
5. (생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p>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② 성인문해교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u>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u>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부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 <u>성인문해교육단체 및 성인문해교육강사</u>----- ----- ----- ----- ----- -----</p>
<p>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u>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u>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 <u>성인문해교육강사</u>----- ----- ----- -----</p>
<p>&lt;신 설&gt;</p>	<p>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u>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u>등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u>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명예 학력인정서·졸업장, 수료증, 상장</u>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음식, 이·미용, 목욕 등 할인 쿠폰 제공 2. 농·특산물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3.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0조 (생 략)</p>	<p>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음식, 이·미용, 목욕 등 할인 쿠폰 제공
  2. 농·특산물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3.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까지 5년간으로 함
- 포상 대상자에 제공되는 비용

**나. 추계결과**

- 2022년 포상 대상자 제공 비용
  - 기타보상금 : 20,000원×150명×1회 = 3,000천원

**3. 작성자**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2년)	2차 년도 (2023년)	3차 년도 (2024년)	4차 년도 (2025년)	5차 년도 (2026년)	계
세	입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시	비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세	출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기 타 보 상 금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재 원 조 달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의 존 재 원							
자 체 수 입	소 계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지 방 세	3,000	18,000	26,000	12,800	3,200	<b>63,000</b>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명예초등학력인정서 수여자 예상 인원(2016년부터 한글대학 운영시작, 매년 개강인원 기준으로 6년 과정운영시)  
 - 2022년 : 150여명, 2023년 : 900여명, 2024년 : 1,300여명, 2025년 : 640여명, 2026년 : 160여명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